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27.

발의자 : 김성식 · 신용현 · 김관영
박선숙 · 박지원 · 이상돈
송기석 · 이동섭 · 장병완
김삼화 · 최경환^국 · 최도자
이용주 · 채이배 · 장정숙
주승용 · 이태규 · 김경진
안철수 · 권은희 · 정동영
박준영 · 조배숙 · 박주현
정인화 · 천정배 · 오세정
김중로 · 손금주 · 윤영일
황주홍 · 김수민 · 김동철
의원(33인)

제안이유

미흡한 복지체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온 가운데
소득양극화,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계층간 격차확대가 심화되고 있음.
또한 저출산 · 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복
지체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적 갈등은 높아지고 성
장잠재력은 추락하는 등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.

이렇듯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2차례 경

제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왔음. 특히 현 정부 들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장기적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의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.

이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 체계로 전환하고,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임.

이에 소득세 과표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조정하여 세입여건 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비해 최저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,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,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41%, 45%로 함(안 제55 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의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종합소득과세표준	세율
1천2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6
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	72만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)
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	582만원 + (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
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1천590만원 + 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)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천760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)
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460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1)
10억원 초과	3억8천160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)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55조(세율)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“종합소득산출세액”이라 한다)을 그 세액으로 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<u>종합소득 과세표준</u>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<u>세율</u>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1천200만원 이하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과세표준의 100분의 6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72만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)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582만 원 + (4천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1천590만 원+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)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1억5천만원 초과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3천760만 원+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)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<u>종합소득 과세표준</u>	<u>세율</u>	<u>1천200만원 이하</u>	<u>과세표준의 100분의 6</u>	<u>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</u>	<u>72만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)</u>	<u>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</u>	<u>582만 원 + (4천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</u>	<u>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</u>	<u>1천590만 원+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)</u>	<u>1억5천만원 초과</u>	<u>3천760만 원+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)</u>	<p>제55조(세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<u>종합소득 과세표준</u>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<u>세율</u>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1천200만원 이하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과세표준의 100분의 6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72만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)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582만 원 + (4천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1천590만 원+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)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3천760만 원+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)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<u>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9천460만 원+(3억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1)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<u>종합소득 과세표준</u>	<u>세율</u>	<u>1천200만원 이하</u>	<u>과세표준의 100분의 6</u>	<u>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</u>	<u>72만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)</u>	<u>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</u>	<u>582만 원 + (4천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</u>	<u>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</u>	<u>1천590만 원+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)</u>	<u>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</u>	<u>3천760만 원+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)</u>	<u>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</u>	<u>9천460만 원+(3억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1)</u>
<u>종합소득 과세표준</u>	<u>세율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천200만원 이하</u>	<u>과세표준의 100분의 6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</u>	<u>72만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</u>	<u>582만 원 + (4천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</u>	<u>1천590만 원+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억5천만원 초과</u>	<u>3천760만 원+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종합소득 과세표준</u>	<u>세율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천200만원 이하</u>	<u>과세표준의 100분의 6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</u>	<u>72만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</u>	<u>582만 원 + (4천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</u>	<u>1천590만 원+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</u>	<u>3천760만 원+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</u>	<u>9천460만 원+(3억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1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
② (생략)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1 247 1362 437"><tr><td data-bbox="811 247 1044 437"><u>10억원 초과</u></td><td data-bbox="1044 247 1362 437">3억8천160만원+(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)</td></tr></table>	<u>10억원 초과</u>	3억8천160만원+(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)
<u>10억원 초과</u>	3억8천160만원+(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)		